

#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개정(안)

---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」(서울특별시 공기업 담당관-3904호)에 의거하여 조례상의 용어 중 ‘근로’가 ‘노동’으로 일괄 변경
-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기존 ‘근로자이사’를 ‘노동자이사’로 변경하고 이를 정관 및 관련 내규에 반영하고자 함

## 2. 관련근거

-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제42조(정관의 변경)
  -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## 3. 주요 개정내용

- 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, 제10조(임원의 임기 및 해임),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의 ‘근로자이사’를 각각 ‘노동자이사’로 변경

## 4. 향후 추진계획(안)

- 2019. 8. 28 : 시의회 상임위원회 사전보고
- 2019. 10월 중 : 이사회 ‘정관 개정(안)’ 의결
- 2019. 11월 중 : 서울시 승인 통보 후 소관 구청에 신고

## 〈정관 신·구 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</b>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사장 1인</li> <li>2. 대표이사 1인</li> <li>3.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<u>근로자이사</u>를 포함한다)</li> <li>4. 감사 1인</li> </ol>	<p><b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</b>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사장 1인</li> <li>2. 대표이사 1인</li> <li>3.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<u>노동자이사</u>를 포함한다)</li> <li>4. 감사 1인</li> </ol>
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 및 해임)</b>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.</p> <p>②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</p> <p>③<u>근로자이사</u>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<u>근로자이사</u> 선출절차를 재이행하여야 연임이 가능하다.</p> <p>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</p> <p>⑤대표이사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성과계약이나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.</p> <p>⑥그 밖에 임원의 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</p>	<p><b>제10조(임원의 임기 및 해임)</b>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.</p> <p>②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</p> <p>③<u>노동자이사</u>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<u>노동자이사</u> 선출절차를 재이행하여야 연임이 가능하다.</p> <p>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</p> <p>⑤대표이사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성과계약이나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.</p> <p>⑥그 밖에 임원의 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</p>
<p><b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li> <li>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/ol>	<p><b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li> <li>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p> <p>5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6. <u>근로자이사</u>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</p>	<p>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p> <p>5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6. <u>노동자이사</u>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</p>